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보건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청원제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균형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7급 1명, 8급 1명, 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5명(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4호까지”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로, “제25호까지”를 “제19호까지,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23.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제9조제4항 중 “제41호”를 “제35호까지, 제35호의2 및 제36호부터 제4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제11조제14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제41조의2제4항제6호 중 “이관기록물과 국내외 수집기록물의”를 “이관기록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대통령지정기록물의”를 “대통령지정·비밀기록물의 암호장비의 관리·운영과”로, “보존매체 수록”을 “매체 수록 등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및 비공개 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를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관리 및

공개여부”를 “관리,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및 공개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대통령기록관리”를 “대통령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반출·반입 관리”를 “서고배치, 반출·반입, 대여 관리, 보존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대통령기록물 보안·재난관리 및 복구시스템의 운영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1,645”를 “1,649”로 하고, 일반직 계 “1,603”을 “1,607”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을 “8”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0”을 “31”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3”을 “34”로,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3”을 “34”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5”를 “86”으로 하고, “전기운영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50”을 “1,654”로 하고, 일반직 계 “1,608”을 “1,612”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을 “8”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0”을 “31”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3”을 “34”로,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3”을 “34”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

보 “86”을 “87”로 하고, “전기운영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9”를 “10”으로,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를 “6”으로,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를 “17”로 하고, “건축운영주사보 1”을 삭제하며, 전기운영서기 “3”을 “2”로, 통신운영서기보 “3”을 “2”로, 열관리운영서기보 “3”을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9”를 “10”으로,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를 “6”으로,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를 “17”로 하고, “건축운영주사보 1”을 삭제하며, 전기운영서기 “3”을 “2”로, 통신운영서기보 “3”을 “2”로, 열관리운영서기보 “2”를 “1”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87”을 각각 “28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84”를 “285”로 한다.

별표 14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u>제14호까지</u> , 제14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부터 <u>제25호까지</u> ,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 ----- <u>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4호까지</u> ----- ---- <u>제19호까지,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u> ----- -----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정책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⑧ ----- -----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3.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u>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⑩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u>13.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련</u>	<u><삭 제></u>

법령 제정·개정 등의 업무 지원

14. 국가기록원 업무의 운영 지원

⑪ ~ ⑬ (생략)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 ③ (생략)

④ 공공데이터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6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보좌한다.

⑤ ~ ⑫ (생략)

⑬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설>

⑭ ~ ⑲ (생략)

제11조(지방자치균형발전실) ① ~ ⑬ (생략)

⑭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삭제>

⑪ ~ ⑬ (현행과 같음)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35호까지, 제35호의2 및 제36호부터 제41호-----

---.

⑤ ~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13. (현행과 같음)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⑭ ~ ⑲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자치균형발전실)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
-----.

1. ~ 9. (현행과 같음)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
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11. ~ 26. (생략)

⑮ (생략)

⑯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⑰ ~ ⑳ (생략)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① ~

③ (생략)

④ 생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인
관기록물과 국내외 수집기록
물의 등록

7. ~ 9. (생략)

⑤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서고 배
치 및 보존매체 수록

<삭제>

11. ~ 26. (현행과 같음)

⑮ (현행과 같음)

-----.

1. ~ 9. (현행과 같음)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
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⑰ ~ ⑳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 인
관기록물 -----

7. ~ 9. (현행과 같음)

⑤ -----
-----.

1. 대통령지정·비밀기록물의
암호장비의 관리·운영과 --
--- 매체 수록 등 관리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비밀기록물의 비밀해제, 보호 기간 연장 및 비공개 기록물 의 주기적 재분류	5. ----- ----- 등에 관한 사항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8.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및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 항	8. ----- 관리,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 류 및 공개 여부 ----- --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⑥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⑥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기록관리 포털시스템 의 관리 · 운영	4. 대통령기록 ----- -----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⑦ 보존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기록물의 반출 · 반입 관리 및 보존환경 유지 · 관리	2. ----- 서고배치, 반 출 · 반입, 대여 관리, 보존시 설 -----
3. ~ 10. (생략)	3. ~ 10. (현행과 같음)
11. 전자기록물 재난관리 · 복구 시스템의 운영 · 관리	11. 대통령기록물 보안 · 재난관 리 및 복구시스템의 운영
제56조(한시정원) ① (생략)	제56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

② <u>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두며, 별표 1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③ (생략)	음)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45</u>	<u>1,649</u>	+4
·	·	·	
·	·	·	
일반직 계	<u>1,603</u>	<u>1,607</u>	+4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7</u>	<u>8</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0</u>	<u>31</u>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3</u>	<u>34</u>	+1

·	·	·	
·	·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3</u>	<u>34</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85</u>	<u>86</u>	+1
·	·	·	
·	·	·	
<u>전기운영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50</u>	<u>1,654</u>	+4
·	·	·	
·	·	·	
일반직 계	<u>1,608</u>	<u>1,612</u>	+4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7</u>	<u>8</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0</u>	<u>31</u>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3</u>	<u>34</u>	+1
·	·	·	

·	·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3</u>	<u>34</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86</u>	<u>87</u>	+1
·	·	·	
·	·	·	
<u>전기운영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5]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 · <u>9</u>	· · <u>10</u>	+1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 <u>5</u>	· · <u>6</u>	+1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 <u>14</u>	· · <u>17</u>	+3
· · <u>건축운영주사보</u>	· · <u>1</u>	· · <u><삭 제></u>	-1

•	•	•	
•	•	•	
전기운영서기	<u>3</u>	<u>2</u>	-1
•	•	•	
통신운영서기보	<u>3</u>	<u>2</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3</u>	<u>2</u>	-1
<u>사무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9</u>	<u>10</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5</u>	<u>6</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4</u>	<u>17</u>	+3
·	·	·	
·	·	·	
<u>건축운영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전기운영서기	<u>3</u>	<u>2</u>	-1
•	•	•	
통신운영서기보	<u>3</u>	<u>2</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2</u>	<u>1</u>	-1
<u>사무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87</u>	<u>288</u>	+1
일반직 계	<u>287</u>	<u>288</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84</u>	<u>285</u>	+1